#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28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김정호·허종식·김남희

최기상 • 이연희 • 정성호

유후덕 • 전재수 • 오세희

박희승 • 이수진 • 전진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말한다.
- 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하 "원료비"라한다)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5(원료비 연동제) ①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 급규정에서 정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

- 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있다.
- ④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에 제공하 는 공익서비스로 한정한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및 재정 부담
- 4. 가스도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		
	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		
	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		
	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u>을 말한다.</u>		
<u>&lt;신 설&gt;</u>	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		
	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		
	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		
	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		
	스공급사업을 말한다.		
<u>&lt;신 설&gt;</u>	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		
	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		
	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하 "원료비"라 한다)과 일정		
	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 일부개정법률

- 제20조의5(원료비 연동제) ① 도 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 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 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 한 운용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비 연 동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 보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 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 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비 연동

<신 설>

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제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 (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있다.

-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 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공부문 및 주택 부문에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로 한정한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 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 · 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 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

- 생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 영 손실
-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 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 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 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 실 및 재정 부담
- 4. 가스도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 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 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